

별첨-3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안내문

□ 편의 제공 대상

- 2025년 한국연구재단 채용공고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,
 - ①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-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제공이 필요한 자

□ 신청 절차

증빙서류 제출 (제출 대상자인 경우)	▶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(원본) 를 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 페이지에서 등록 ※ 유형별 증빙서류는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참고(진단서 등)
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	▶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진단서 등 제출서류 내용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 검토
편의 제공	▶ 신청 내역 검토 결과에 따라 편의 제공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, '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'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의사진단서(소견서)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- 시험시간 연장, 점자문제지,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②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
 - 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<https://www.hira.or.kr>) → [병원·약국 찾기]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- 편의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: 한국연구재단 채용사이트 Q&A 게시판, 콜센터(☎ 02- 2038-3467)

□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및 증빙서류

○ 필기전형

장애유형 및 정도			필기시험		비고
	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	
지체 장애인	상지	공통	·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자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술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자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술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
뇌병변 장애인	공통		·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자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술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술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의사진단서 (사본)	기존 4~6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	
시각 장애인	공통		· 확대 문제지 및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자참 허용 · [논술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	
	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 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 (선택형 1.7배, 논술형 1.5배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진단서 (사본)	기존 1~2급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기존 3급 2호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 (선택형 1.5배, 논술형 1.2배)	-	기존 3급 1,2호
	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 (선택형 1.7배, 논술형 1.5배)	의사진단서 (사본)	기존 4급 2호
		·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 (선택형 1.5배, 논술형 1.2배)	-	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2 이하인 사람		-	기존 4,5급 1호
		·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 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 (선택형 1.5배, 논술형 1.2배)	-	기존 5급 2호
		· 나쁜 눈의 시력이 0.02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 이하인 사람		의사진단서 (사본)	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 이하
		·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	-	기존 6급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자참 허용	-	기존 2~6급
	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

※ 확대문제지: A3 규격의 118%(14point), 150%(18point)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
※ 확대답안지(선택형시험)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

※ 축소문제지: A4 규격의 82%(10point)로 축소된 1종류

※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

○ 다차원전형 및 면접전형

장애유형		편의지원 내용
지체장애	상지	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 서식 확대 제공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	하지	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사용자)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뇌병변장애		· 전담도우미 지원 · 관련 서식 확대 제공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·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면접시간 1.5배 연장(단, 다차원전형은 제외)
시각장애		· 전담도우미 지원 ·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· 자료작성 타이핑 인력 제공 · 관련 서식 확대 제공 · 관련 서식 점자 지원 · 음성지원 컴퓨터 제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
청각장애		· 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 등) 지원 · 필담면접, 문자통역,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 · 면접위원과의 거리 1.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·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·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· 면접시간 1.5배 연장(단, 다차원전형은 제외)
기타		· 장애유형과 정도,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(해당 응시자)

○ 발급기관: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
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,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

○ 발급일자: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

구분	응시원서 접수 마감일	유효 진단서 발급일
연구직	2025년 4월 2일	2023년 4월 3일 이후

○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(아래 3가지)

-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(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및 시야각 명기)
 -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 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- ※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(시험시간 연장 신청 시 →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)
- ※ '편의제공 신청 게시판' 등록 내용과 의사진단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<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>

장애유형 및 정도		예시 ※ ①~③ 반드시 기재
시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- 시력/시야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시간이 더 필요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확대 답안지
뇌병변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기타	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- 증상: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

※ **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**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**(소견서 불인정)